투자 위험 등급 2등급 [높은 위험]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한화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예상액(97.5% VaR 모형 사용)]**을 감안하여 **2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펀드의 위험 등급은 운용실적,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투 자 설 명 서

이 투자설명서는 **한화재팬코아증권투자신탁1호(주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화재팬코아증권투자신탁1호(주식)**의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 **한화재팬코아증권투자신탁1호(주식)**
2. 집합투자업자 명칭 : 한화자산운용주식회사
3. 판 매 회 사 : 각 판매회사 본·지점(판매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hanwhafund.co.kr)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작 성 기 준 일 : 2026년 6월 14일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 2026년 7월 2일
6.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으로 10조좌까지 모집
 [모집(매출) 총액: 10조원]
7.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 가능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한화자산운용㈜ 본점, 각 판매회사 및 협회
9.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 관련 : 해당사항 없음

※ 이 투자신탁은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기재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투자자는 간이투자설명서 대신 투자설명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원본손실위험, 투기등급자산에의 투자 등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6.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7.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8.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판매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 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9.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 환매금액에서 후취판매수수료가 차감되므로 환매금액보다 실수령금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10.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이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인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세조약에 따라 투자자의 금융 정보가 국세청 및 해당 국가(투자자의 국적상 국가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보고될 수 있으며, 판매회사는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 확인을 위하여 계좌 개설시 수집된 정보 이외의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1.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 이 투자신탁은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을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해외상장주식의 매매·평가 손익(환율변동에 의한 손익을 포함)은 투자자의 과세대상 이익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환헤지 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여전히 과세대상 이익이므로 상황에 따라서는 세금 측면에서 중대하고 불리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목 차

요약정보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3. 모집예정금액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5. 인수에 관한 사항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4. 집합투자업자
5. 운용전문인력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투자방침 및 수익구조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신탁업자)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5.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요약정보〉 기준일: 2026.06.14

한화재팬코아증권투자신탁1호(주식) [펀드코드: 65475]

투자 위험 등급
2등급 [높은 위험]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한화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예상액(97.5% VaR 모형 사용)]**을 감안하여 **2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 상품으로, 주로 일본 주식에 투자하여, 주식가격 변동위험, 환율변동위험, 국가위험 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요약정보는 **한화재팬코아증권투자신탁1호(주식)**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요약한 핵심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이전에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약정보]

투자목적 및 전략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일본 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며, 중장기적으로 자본차익을 추구하는 것을 기본전략으로 합니다.

※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투자전략]

1) 투자신탁재산의 60% 이상을 일본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 등에 투자하며, 철저한 리서치를 바탕으로 종목선정을 통해 초과수익을 추구합니다.

2) 환위험 헤지 전략: 원화로 표시되는 당해 투자신탁의 투자금액이 외화표시 자산에 투자되기 때문에 투자자산의 표시통화 대비 원화의 환율변동위험을 헤지하기 위해서, 파생상품을 이용한 헤지목적의 거래(목표 헷지비율은 환헷지가 가능한 외화자산의 70% 이상이며 100%를 초과할 수 있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 이 투자신탁의 신탁재산 운용에 대한 포트폴리오 및 리서치 자문을 일본 금융그룹인 Mitsubishi UFJ Financial Group (MUFG)의 자산운용 전문 계열사인 Mitsubishi UFJ Trust & Banking(MUTB)에게서 받고 있으며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투자자문회사의 보수는 집합투자업자가 부담합니다.

분류

투자신탁, 증권(주식형),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 종류형

투자비용

클래스 종류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총보수 및 비용 (단위: %)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보수·비용 예시 (단위: 천원)				
	판매 수수료	총 보수	판매 보수	동종 유형 총보수	총보수·비용	1년	2년	3년	5년	10년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납입금액의 1.0% 이내	1.50	0.61	1.73	1.5006	252	412	580	941	2,015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없음	1.99	1.10	1.87	1.9906	204	418	643	1,127	2,566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3년 미만 환매금액의 0.15% 이내	1.24	0.35	-	1.2406	127	261	401	703	1,599

*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보수·비용 예시'는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향후 투자기간별 지불하게 되는 총비용(판매수수료 + 합성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선취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은 일정하고,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로 가정하였습니다.

* 종류 A형과 종류 C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 10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이나 추가납입, 보수 등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은 오프라인 클래스에 비하여 일반적으로 투자비용이 저렴한 온라인 클래스가 설정되지 않았습니다.**
*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구체적인 투자비용은 투자설명서(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투자실적 추이 (연평균 수익률, 세전기준)

종류	최초 설정일	최근 1년 2025/03/04~ 2026/03/03	최근 2년 2024/03/04~ 2026/03/03	최근 3년 2023/03/04~ 2026/03/03	최근 5년 2021/03/04~ 2026/03/03	설정일 이후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2007-02-21	48.93	29.50	30.16	16.45	4.81
비교지수(%)		40.49	21.57	25.60	16.13	4.33
수익률변동성(%)		21.28	20.72	18.73	17.85	18.95

* 비교지수: TOPIX(KRW에 대해 헷지) 90%, 매경BP Call 10% (비교지수 성과에는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음)
*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 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집합투자기구 총비용 지급 후 해당기간 동안의 세전 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 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은 해당기간 펀드의 연환산 주간수익률이 평균수익률에서 통상적으로 얼마만큼 등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로서, 변동성이 높을수록 수익률 등락이 빈번해 펀드의 손실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운용전문인력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단위: 개, 억원)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해외-주식형, 단위:%)				운용 경력년수
			집합투자기구수	운용규모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왕승묵	1981년	책임(팀장)	14	4,356	11.01	4.95	95.46	42.06	3년7개월

* 기준일 : 2026년 6월 14일
* "책임운용전문인력"은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의미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의미합니다.
*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를 의미하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 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투자자 유의사항

·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보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어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하시면 귀하의 집합투자증권 매입 이전까지 교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위험등급을 확인하시고, 귀하의 투자 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 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요투자 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 내용
주식가격 변동위험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의 60% 이상을 일본 상장주식 등에 투자하므로 이들 지역의 주식시장의 가격변동에 따른 신탁재산의 가치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한 주식

		의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신탁재산의 가치도 하락하게 됩니다.
	환율변동위험	외국 주식 등 외화자산은 환율변동에 따른 신탁재산의 가치변동에 노출됩니다. 이 투자신탁은 외국통화(주로 일본 엔화)로 해외자산에 투자하기 때문에 도중에 환율이 떨어지면 환차손(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환율변동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헷지를 실시합니다. 외화자산의 환율변동위험에 대해서 한국원화간 선물환 계약 등을 통해 환위험을 헷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목표 환헷지 비율은 환헷지 가능 순자산의 70% 이상이며 100%를 초과할 수도 있음), 기타 환헷지 수단이 없는 현지통화로 표시된 자산에 대해서는 환헷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포트폴리오의 변경, 외환시장의 상황 등에 따라 실제 헷지비율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 투자신탁은 추가형·개방형 투자신탁으로서 이러한 전략으로도 외화 표시자산에 대한 환위험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으며 펀드 규모가 작거나 빈번한 설정·해지, 환헷지 수단이 없는 통화의 경우 등의 경우에는 효율적 환헷지가 어려울 수 있으며 기준가격 산출에 있어 외화자산과 환헷지 목적으로 투자한 파생상품의 평가반영 시점이 상이한 경우 헷지효과가 일시적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투자대상 국가의 경제성장 등으로 인하여 해당국 통화의 가치가 올라가는 경우에는 투자자들이 환차익을 얻을 수 있지만, 환헷지를 실시할 경우 오히려 이러한 추가적 이익기회가 상실되기도 합니다. 또한, 환헷지를 실시할 경우 환헷지 계약 만기 후 재계약(roll-over)시 시장환율 및 선물환 프리미엄 등에 따라 헷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거래 수수료 등의 추가적 비용이 소요됩니다.
	국가위험	이 투자신탁은 일본의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에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정부정책 및 제도의 변화로 인해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외국인에 대한 투자제한, 조세제도 변화 등의 정책적 변화 및 사회전반적인 투명성부족으로 인한 공시자료의 신뢰성 등의 위험도 있습니다.
	해외투자자문업자 변경위험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외투자자문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하거나, 다른 해외투자자문업자로 자문계약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기타 다른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매입 방법	· **오후 3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 · **오후 3시 경과 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4영업일(D+3)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	**환매 방법** · **오후 3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4영업일(D+3)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7영업일(D+6)에 관련 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 · **오후 3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5영업일(D+4)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8영업일(D+7)에 관련 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
환매 수수료	없음	
기준가	**산정방법**	- 당일 기준가격 = (전일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 부채총액) / 전일 집합투자기구 총좌수 -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
	공시장소	판매회사 본·영업점, 집합투자업자(www.hanwhafund.co.kr) · 판매회사 ·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dis.kofia.or.kr)에 게시합니다.
과세	**구분**	**과세의 주요 내용**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익자	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지방소

<table>
<tr><td></td><td colspan="3">
<table>
<tr><td></td><td>득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td></tr>
</table>
※ 세제 혜택이 적용되는 집합투자기구 및 종류 수익증권의 경우에는 과세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td></tr>
<tr><td>전환절차 및 방법</td><td colspan="3">해당사항 없음</td></tr>
<tr><td>집합투자업자</td><td colspan="3">한화자산운용㈜ (대표번호: 02-6950-0000 / 인터넷 홈페이지: www.hanwhafund.co.kr)
[해외 투자자문업자: Mitsubishi UFJ Trust & Banking(MUTB)]</td></tr>
<tr><td>모집기간</td><td>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 가능</td><td>모집·매출 총액</td><td>10조좌</td></tr>
<tr><td>효력 발생일</td><td>2026년 7월 2일</td><td>존속 기간</td><td>별도로 정해진 신탁계약기간은 없음</td></tr>
<tr><td>판매회사</td><td colspan="3">집합투자업자(www.hanwhafund.co.kr), 한국금융투자협회(dis.kofia.or.kr) 인터넷홈페이지 참고</td></tr>
<tr><td>참조</td><td colspan="3">집합투자업자의 사업목적, 요약 재무정보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4부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td></tr>
<tr><td>집합투자기구의 종류</td><td colspan="3">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특성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되며, 집합투자기구 종류의 대표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table>
<tr><th colspan="2">종류(Class)</th><th>집합투자기구의 특징</th></tr>
<tr><td rowspan="2">판매 수수료</td><td>수수료 선취(A)</td><td>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미징구형(C)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 10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1년 10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td></tr>
<tr><td>수수료 미징구(C)</td><td>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선취형(A)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 10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1년 10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td></tr>
<tr><td rowspan="2">판매 경로</td><td>오프라인</td><td>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td></tr>
<tr><td>온라인 슈퍼(S)</td><td>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낮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td></tr>
<tr><td rowspan="3">기타</td><td>고액(I)</td><td>납입금액이 50억원 이상 수익자로 제한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td></tr>
<tr><td>랩(w)</td><td>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 또는 법 시행령 제103조에서 규정하는 금전신탁이 가입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td></tr>
<tr><td>기관(F)</td><td>법에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 보험업법 제108조 제1항 제3호의 변액보험계약,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따른 기관투자자 및 기금이 가입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td></tr>
</table>
</td></tr>
</table>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증권신고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투자설명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kofia.or.kr),

집합투자업자(www.hanwhafund.co.kr)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 자산운용보고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hanwhafund.co.kr)
- 수시공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hanwhafund.co.kr)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기구 명칭(종류형 명칭)	펀드코드
한화재팬코아증권투자신탁1호(주식)	65475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65476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65477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I)	7220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 펀드 등(C-F)	71715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C-w)	AG527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AQ612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가. 형태별 종류: 투자신탁

나. 운용자산별 종류: 증권집합투자기구(주식형)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개방형(환매가 가능한 집합투자기구)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추가형(추가로 자금납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

마. 특수형태 표시:

- 종류형(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

바.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 해당사항 없음

주)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 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2부의 내용 중 “투자대상”과 “투자전략”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모집예정금액: 이 투자신탁은 10조좌까지 모집(판매) 가능하며 1좌단위로 모집합니다. 다만, 모집(판매)기간이 별도로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모집예정금액까지 계속 모집(판매) 가능합니다. (1좌 = 1원, 원본액 기준)

주 1) 모집(판매)기간 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주2) 모집(판매) 예정금액이 줄거나 모집(판매) 예정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됩니다.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가. 모집기간: 추가형으로 별도의 모집기간 없이 계속 모집(판매) 가능합니다.

나. 모집장소: 판매회사 본·지점으로 판매회사의 명단은 금융투자협회(www. 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hanwhafund.co.kr)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모집절차 및 방법: 판매회사 영업일에 판매회사 창구를 통하여 모집합니다.

주) 모집(매입) 방법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2부의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인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기구 명칭(종류형 명칭)	펀드코드
한화재팬코아증권투자신탁1호(주식)	65475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65476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65477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I)	7220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 펀드 등(C-F)	71715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C-w)	AG527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AQ612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변경시행일	주요 변경 사항
2007.02.21	Pru재팬코아주식투자신탁1호 최초설정
2007.06.01	푸르덴셜재팬코아주식투자신탁1호로 투자신탁 명칭 변경
2008.08.21	약관변경(모든 클래스 수익증권 환매수수료 변경)
2009.04.26	자본시장법에 따라 펀드명칭 변경 : 푸르덴셜재팬코아주식투자신탁1호 → 푸르덴셜재팬코아증권투자신탁1호(주식)
2010.05.03	판매회사 보수율 인하
2011.02.07	일반사무관리회사 변경: ㈜SC펀드서비스 → 신한아이타스㈜
2011.09.19	집합투자업자 합병으로 인한 투자신탁 명칭 변경 : 푸르덴셜재팬코아증권투자신탁1호(주식) → 한화재팬코아증권투자신탁1호(주식)
2013.03.08	종류 C-F수익증권 가입자격 변경, 종류 C-w수익증권 신설
2014.03.14	종류 S수익증권 신설
2015.03.25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 (박준흠 → 김종육)
2016.04.08	- 종류 C-w수익증권 가입자격 변경 - 종류 A수익증권 선취판매수수료 변경
2016.07.02	투자위험 등급 분류 체계 개편 반영: 1등급(매우 높은 위험) → 2등급(높은 위험)
2016.10.07	환매수수료 삭제
2018.08.31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 김종육 → 신동혁
2019.04.16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 신동혁 → 권재형
2019.08.22	Nikko Asset Management Co., Ltd.와의 위탁운용계약 해지 및 Mitsubishi UFJ Trust & Banking(MUTB)와 투자자문계약 체결
2019.09.25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2019.08.01) 반영
2020.03.04	투자위험등급 변경: 2등급(높은 위험) → 3등급(다소 높은 위험)
2020.03.20	전자증권제도 시행 반영
2020.10.05	매입 및 환매기준가격 적용시점 변경
2021.03.11	- 투자위험등급 변경: 3등급(다소 높은 위험) → 2등급(높은 위험) -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 권재형 → 조은지
2022.05.27	-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 (조은지 → 김종육) - 작성기준일 변경에 따른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업데이트
2022.06.23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 (김종육 → 김동한)

2022.11.29	고유재산 추가 투자금액 회수에 관한 사항 신설 ① 1회차: 5억원 (2022.11.29 환매청구) ② 2회차: 5억원 (2022.12.21 환매청구)
2023.03.09	- 결산에 따른 정기갱신 - 수익률 변동성 변경(16.52% → 18.11%) - 펀드의 기타비용, 증권거래비용, 금융비용 관련 항목 및 문구 업데이트 - 작성기준일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
2023.04.12	-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김동한 → 김홍길) - 일반사무관리회사 사명 변경 (신한아이타스 → 신한펀드파트너스)
2023.10.31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김홍길 → 황성철)
2024.03.14	- 결산에 따른 정기갱신 - 수익률 변동성 변경(18.11% → 15.87%) -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2023.02.20) - 작성기준일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2024.03.03) - 투자중개업자의 선정기준 변경 반영
2024.08.30	- 일반사무관리회사 변경 (신한펀드파트너스→하나펀드서비스) (2024.09.02 시행) - 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 -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 (환매 가능 여부 및 환매수수료 부과 여부 표기)
2025.02.27	- 정기갱신(2025.02.20) -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 (황성철 → 김홍길) - 투자위험등급 산정기준 변경(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수익률의 표준편차 → 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 예상액(97.5% VaR) 기준) - 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 예상액(97.5% VaR) : 37.33% -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사항 반영(외국납부세액 공제 방식 개정) - 작성기준일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2025.02.20) - 채권평가회사 관련 변경사항 반영 - 용어변경(대차대조표 → 재무상태표, 제0영업일 → 0영업일)
2025.06.18	-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 (김홍길 → 최혜린) - 부책임운용전문인력 신설 (- → 김홍길)
2026.03.17	- 결산에 따른 정기갱신 (2026.02.05) - 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 예상액(97.5% VaR) 변경 (37.33% → 42.06%) - 작성기준일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 (2026.03.03)
2026.03.24	- 부책임운용전문인력 삭제 (김홍길 → -)
2026.07.02	-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 (최혜린 → 왕승묵)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이 집합투자기구는 신탁계약의 종료일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탁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투자신탁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익자의 저축기간 또는 만기 등의 의미와 다를 수 있습니다.

주) 법령 또는 집합투자규약상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로 해산(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산(해지)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5부의 내용 중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집합투자업자

가. 명칭: 한화자산운용주식회사

나.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63로 50 한화금융센터63 (02-6950-0000)

주)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4부의 내용 중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운용전문인력 현황

(기준일: 2026.06.14)

구분	성명	생년	운용현황 (단위: 개, 억원)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수익률 (해외-주식형, 단위:%)				주요경력 및 이력
			집합투자기구수	운용규모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책임 (팀장)	왕승묵	1981	14	4,356	11.01	4.95	95.46	42.06	- 운용경력년수: 3년 7개월 - 런던정경대(LSE) 금융학 석사 - 미래에셋증권(구 대우증권) (2007.01~2013.06) - 미래에셋증권(구 대우증권)런던법인 (2013.06~2018.06) - 한화자산운용(2020.03~현재)

주1) "책임운용전문인력"이란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주2)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3)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당사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를 의미하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당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주4)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주5) 집합투자업자의 사정에 따라 운용전문인력이 교체될 수 있으며, 관련법령 또는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시할 예정입니다.

※ 운용중인 집합투자기구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해당없음

나. 최근 3년간 책임운용전문인력 변동사항

변경일	변경전	변경후
2023.04.12	김동한	김홍길
2023.10.31	김홍길	황성철
2025.02.27	황성철	김홍길
2025.06.18	김홍길	최혜린
2026.07.02	최혜린	왕승묵

다. 최근 3년간 부책임운용전문인력 변동사항

변경일	변경전	변경후
2025.06.18	-	김홍길
2026.03.24	김홍길	-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증권집합투자기구(주식형), 개방형, 추가형, 종류형

나. 종류형 구조

이 집합투자기구는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종류형집합투자기구로서 이 투자신탁이 보유한 종류 수익증권은 아래와 같습니다.

종류(Class)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판매 수수료	수수료 선취(A)	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미징구형(C)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 10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1년 10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수수료 미징구(C)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선취형(A)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 10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1년 10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판매 경로	오프라인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온라인 슈퍼(S)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낮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기타	고액(I)	납입금액이 50억원 이상 수익자로 제한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랩(w)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 또는 법 시행령 제103조에서 규정하는 금전신탁이 가입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기관(F)	법에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 보험업법 제108조 제1항 제3호의 변액보험계약,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따른 기관투자자 및 기금이 가입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일본 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며, 중장기적으로 자본차익을 추구하는 것을 기본전략으로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합니다.)

투자대상	취득한도	투자대상자산 세부설명
①주식	- 60%이상 단, 일본상장주식	- 주식은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법 제9

	(공모주등 포함) 60%이상	조제15항제3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등에 한한다)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을 말함
②채권	- 40%이하	- 채권은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BBB-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을 말함.
③자산유동화증권	- 40%이하	- 자산유동화증권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을 말함
④어음	- 40%이하	- 어음은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3- 이상이어야 한다)를 말함
⑤금리스왑거래	- 거래시점에서 교환하는 약정이자의 산출근거가 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의 총액이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 총액의 100% 이하	
⑥집합투자증권등	- 5%이하 단, 95%이상이 외화자산에 운용되는 집합투자증권 20%이하, ETF 30%이하	- 집합투자증권등이란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법령에 따라 발행된 것을 포함)을 말함 - ETF란 법 234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법령에 따라 발행한 것을 포함)을 말함
⑦환매조건부매도	- 보유 증권총액의 50%이하	- 환매조건부매도란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경우를 말함
⑧증권의 대여	-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이하	
⑨장내파생상품 및 장외파생상품	- 장내파생상품은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주식·채권·통화나 주식·채권· 통화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해외장내파생상품을 포함)을 말함 - 장외파생상품은 법 제5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외파생상품으로서 통화나 통화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해외장외파생상품을 포함)을 말함	
기 타	- 법시행령 제26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1. 단기대출(법시행령 제83조제4항의 금융기관에 대한 30일이내의 금전의 대여) 2. 금융기관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함) 3. 1호 및 2호에 준하는 외화표시자산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대상 자산의 신용평가등급이 집합투자규약 제17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서 정한 신용평가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해당자산을 신용평가등급의 최초 하락일로부터 3개월(이하 “처분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처분하여야 하며, 처분기간 이내에 해당자산의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처분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 상기에서 정한 처분기간 또는 연장된 처분기간 이내에 해당자산의 신용평가등급이 집합투자규약 제17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서 정한 신용평가등급 이상으로 상승한 경우 집합투자	

	업자의 처분의무는 소멸한다.
1) 증권의 대여 : 집합투자기구의 이익 증대 등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해 증권대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 수익률 증진 : 부수적인 운용전략으로 대차거래를 통해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으며, 안정적 대차거래 관리와 장기적 관점의 대차 수수료 수익을 추구합니다. 나. 기타 효율적, 안정적 운용을 위해 증권대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장내 및 장외파생상품에의 투자는 주로 헷지 목적으로 투자하나 상황에 따라 헷지외의 목적으로 투자(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의 10%이내 한도) 할 수 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은 외화표시자산 투자에 따른 환율변동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외파생상품(선물환 계약) 매매를 통한 환헷지 전략을 사용합니다. 이 경우 장외파생상품 거래상대방은 법 시행령 제80조제5항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나. 투자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구 분	내 용
①이해관계인과의 거래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 가.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
②동일종목 증권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8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 · 예금 ·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債權)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봅니다.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으로서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 · 예탁하여 취득한 채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다.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가총액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 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개월간 적용합니다.
③동일법인발행 지분증권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④파생상품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⑤파생상품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⑥장외파생상품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⑦장외파생상품	법 시행령 제80조제5항에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⑧계열회사 발행 증권	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⑨후순위채권	투자신탁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채권에 투자하는 행위

주) 투자제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법령 및 집합투자규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한도 및 투자제한의 예외〉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기의 가.투자대상의 ①,②,③,④의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상기의 가.투자대상의 ①,②,③,④의 투자한도를 위반하게 되는 경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상기의 가.투자대상의 ⑤,⑥,⑦,⑧의 투자한도 및 상기의 나.투자제한의 ②,③,④,⑤,⑥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집합투자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1.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3.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4.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5.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 상기의 나.투자제한의 ②의 본문,④,⑤,⑥의 규정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1개월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투자방침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운용전략 및 투자방침

1) 투자신탁재산의 60%이상을 일본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 등에 투자하며, 철저한 리서치를 바탕으로 한 종목선정을 통해 초과수익을 추구합니다.

2) 환위험 헤지 전략: 원화로 표시되는 당해 투자신탁의 투자금액이 외화표시 자산에 투자되기 때문에 투자자산의 표시통화 대비 원화의 환율변동위험을 헤지하기 위해서, 파생상품을 이용한 헤지목적의 거래(목표 헷지비율은 환헷지가 가능한 외화자산의 70% 이상이며 100%를 초과할 수 있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 투자신탁의 신탁재산 운용에 대한 포트폴리오 및 리서치 자문을 일본 금융그룹인 Mitsubishi UFJ Financial Group (MUFG)의 자산운용 전문 계열사인 Mitsubishi UFJ Trust & Banking(MUTB)에게서 받고 있으며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투자자문회사의 보수는 집합투자업자가 부담합니다.

※ 상기 투자전략은 시장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비교지수

이 투자신탁은 일본 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식 등에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이 투자신탁의 성과 비교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은 비교지수를 사용하고 있으며, 시장 상황 및 투자 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 지수의 등장에 따라 이 비교지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 등록 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 비교지수: TOPIX(KRW에 대해 헷지) 90%, 매경BP Call 10%

▶ TOPIX(Tokyo Stock Price Index): 동경주식거래소에서 발표하는 일본 주식시장을 대표하는 주가 지수로서, 동경주식거래소 상장 종목을 대상으로 한 시가총액식 지수

▶ 매경BP Call: 한국채권평가에서 발표하는 단기자금시장지수 중 하나로서, 콜금리의 변동성과 성과를 보여주는 유동성 지수

(3) 위험관리 전략

- 위험관리체계: 리스크관리위원회를 통해 회사 전체의 위험 정책을 수립·변경하며 자산별, 펀드별 투자 가이드라인을 설정합니다. 위험관리부서는 자산별, 펀드별 거래한도 및 투자한도, 또는 손실한도 준수 여부를 점검하며, 핵심 위험요인을 정의하여 포트폴리오 위험을 측정·관리합니다. 정기적으로 운용부서 및 운용본부장에게 포트폴리오 위험, 기준지수 대비 성과, 요인분석 및 추적오차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대표이사 이하 관계자들이 사후 조치 및 재발방지대책을 결정합니다.

- 주식위험 관리: 편입비, 섹터별 active weight, 포트폴리오 베타를 통해 포트폴리오 위험을 관리하며 기준지수 대비 추적오차를 점검하여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 환위험 관리

1) 환헤지 여부

• 이 투자신탁은 일본의 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식 또는 일본 기업이 발행한 주식(DR포함)에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환헤지 전략을 사용합니다.

• 환헤지란 선물환 계약 등 파생상품 등을 이용하여 수익증권 매입시점과 환매시점의 환율변동으로 인한 위험을 최소화 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2) 환헤지 방법 및 목표 헤지비율

• 환헤지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외화자산의 경우 파생상품을 이용한 헷지목적의 거래(목표 헷지비율은 환헷지가 가능한 외화자산의 70% 이상이며 100% 를 초과할 수 있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투자신탁 설정·해지, 환율변동, 주가변동, 포트폴리오 변경 및 외환시장 상황에 따라 실제 헤지비율은 목표헤지비율과 상이할 수 있으며 펀드 규모가 작거나 빈번한 설정•해지 등의 경우에는 효율적 환헷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환헤지의 장단점

• 외국통화로 표시된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도중에 환율이 떨어지면 환차손(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헤지를 실시함으로써 예상치 못한 환율변동으로 인한 손실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그러나 환헤지를 실시할 경우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환헤지로 인하여 환차익(환율 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상실되기도 합니다.

4) 환헤지비용 등

• 환헤지를 실시할 경우 거래수수료 등의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되며, 환헤지 계약 만기 후 재계약(roll-over)시 시장환율 및 선물환 프리미엄 등에 따라 헤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환헤지비용은 환헤지 관련 파생상품의 계약환율에 포함되어 있어 별도의 산출은 불가능 합니다.

[용어 설명]

- 섹터별 active weight : 포트폴리오에서 각 섹터(업종)가 차지하는 비중과 비교지수에서 해당 섹터가 차지하는 비중 간 차이. 가령 기준지수가 KOSPI인 포트폴리오의 금융섹터 비중이 12%이고 KOSPI에서 금융섹터 비중이 15%라면 이 포트폴리오의 금융섹터 active weight은 -3%가 됩니다. 섹터별 active weight 절대값이 커지면 기준지수 대비 추적오차가 커질 위험이 있습니다.
- 베타 : 비교지수의 수익률 변화에 대해 포트폴리오 성과가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였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비교지수가 일정 비율만큼 변화할 때 포트폴리오 수익률은 그에 비해 얼마나 변화하였는지를 측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가령 비교지수가 KOSPI라고 하면 베타가 1인 포트폴리오는 수익률이 KOSPI 수익률 변동폭만큼 움직인다는 의미입니다. 베타가 1보다 큰 포트폴리오는 수익률이 KOSPI 수익률보다 민감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위험이 크며, 베타가 1보다 작은 포트폴리오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의 60% 이상을 일본 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식 또는 일본 기업이 발행한 주식(DR포함)에 투자하는 주식형 집합투자기구 입니다. 따라서 투자한 일본의 기업이 발행한 주식의 가격변동에 따라 투자자의 수익률이 주로 결정됩니다.

다. 투자대상지역 현황

이 집합투자기구는 주식에 자산의 60% 이상을 투자하는 주식형 집합투자기구로, 투자대상국가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본	- 인구: 1억 2,602만(2020년 1월 기준) - GDP: USD 5조 820억('19) - 경제성장률(실질): -4.8%('20), 0.3%('19) - 인플레이션: 0.0%('20), 0.3%('19) - 시가총액 (거래소): USD 6조 5,148억('20) - 주가상승률(TOPIX, JPY기준): 4.84%('20), 15.21%('19), -17.80%('18)

자료: IMF, World Bank, Bloomberg

주: 인플레는 CPI 기간 중 평균, 주가관련 자료는 연말 기준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아니하며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

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아니합니다.

다음의 투자위험은 본 자료 작성시점 현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위험을 기재한 것이며, 발생 가능한 모든 위험을 기재한 것이 아님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향후 운용과정 등에서 현재로는 예상하기 어려운 위험이 발생하거나 현재 시점에서는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기재에 누락되어 있는 위험의 정도가 커져 그 위험으로부터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일반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주식가격변동위험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의 60%이상을 일본 상장주식 등에 투자하므로 이들 지역의 주식시장의 가격변동에 따른 신탁재산의 가치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한 주식의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신탁재산의 가치도 하락하게 됩니다.
환율변동위험	외국 주식 등 외화자산은 환율변동에 따른 신탁재산의 가치변동에 노출됩니다. 이 투자신탁은 외국통화(주로 일본 엔화)로 해외자산에 투자하기 때문에 도중에 환율이 떨어지면 환차손(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환율변동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헷지를 실시합니다. 외화자산의 환율변동위험에 대해서 한국원화간 선물환 계약 등을 통해 환위험을 헷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목표 환헷지 비율은 환헷지 가능 순자산의 70%이상이며 100%를 초과할 수도 있음), 기타 환헷지 수단이 없는 현지통화로 표시된 자산에 대해서는 환헷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포트폴리오의 변경, 외환시장의 상황 등에 따라 실제 헷지비율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 투자신탁은 추가형·개방형 투자신탁으로서 이러한 전략으로도 외화 표시자산에 대한 환위험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으며 펀드 규모가 작거나 빈번한 설정·해지, 환헷지 수단이 없는 통화의 경우 등의 경우에는 효율적 환헷지가 어려울 수 있으며 기준가격 산출에 있어 외화자산과 환헷지 목적으로 투자한 파생상품의 평가반영 시점이 상이한 경우 헷지효과가 일시적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투자대상 국가의 경제성장 등으로 인하여 해당국 통화의 가치가 올라가는 경우에는 투자자들이 환차익을 얻을 수 있지만, 환헷지를 실시할 경우 오히려 이러한 추가적 이익기회가 상실되기도 합니다. 또한, 환헷지를 실시할 경우 환헷지 계약 만기 후 재계약(roll-over)시 시장환율 및 선물환 프리미엄 등에 따라 헷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거래 수수료 등의 추가적 비용이 소요됩니다.
금리변동위험	채권의 가격은 이자율에 의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채권가격 하락에 의한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용위험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증권 등의 발행회사 또는 단기금융상품 거래상대방의 경영상태가 악화되거나 신용도하락, 채무불이행, 부도 등 신용사건이 발생할 경우 해당 증권 및 단기금융상품의 가치가 급격히 하락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투자위험	파생상품(선물, 옵션에의 투자)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효과(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높은 위험에 노출됩니다.

나. 특수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국가위험	이 투자신탁은 일본의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에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투자대상국가

	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정부정책 및 제도의 변화로 인해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외국인에 대한 투자제한, 조세제도 변화 등의 정책적 변화 및 사회전반적인 투명성부족으로 인한 공시자료의 신뢰성 등의 위험도 있습니다.
외국세법에 의한 과세에 따른 위험	해외 증권에 투자할 경우 해당 증권이 특정 국가에 상장되어 거래됨에 따라 특정 외국의 세법에 의한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향후 특정 외국의 세법 변경으로 높은 세율이 적용될 경우 세후배당소득, 세후양도소득 등이 예상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

다. 기타 투자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유동성 위험	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신탁재산에서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대상 종목의 유동성부족에 따른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신탁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오퍼레이션 위험	해외투자의 경우 국내투자와 달리 시차에 의한 시장폐장 및 개장시간의 차이로 인해 신탁재산의 평가에 있어 시차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복잡한 결제과정 및 현금 운용과정에서 운용적인 위험이 국내투자보다 더 높습니다.
환매연기위험	투자신탁 재산의 매각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거나 환매에 응하는 것이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펀드규모위험	투자신탁의 설정초기 또는 환매 등의 이유로 투자신탁 규모가 일정규모 이하로 작아지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투자대상자산의 편입 및 분산투자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일부 자산에 집중 투자될 수 있으며, 이러한 요인들은 투자신탁의 성과 및 위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해외투자자문업자 변경위험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외투자자문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다른 해외투자자문업자로 자문계약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기구 해지의 위험	투자신탁을 설정한 이후 1 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 년이 지난 후 1 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등 투자자의 동의 없이 해당 집합투자기구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증권대차 거래 위험	증권대차 거래가 일어나는 펀드의 경우 예탁결제원 등 시장참여자들의 관리로 발생할 가능성은 극히 낮으나 해당 대차증권의 미상환, 관련 담보의 부족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타위험	환매청구일과 환매 기준가격 적용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 기준가격 적용일까지의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신탁재산의 운용에 있어 예상치 못한 국내외 정치, 경제상황 및 정부의 조치, 세제의 변경 등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예상하지 못한 가치하락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예상액) 또는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위험등급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본손실가능성의 판단기준으로는 가격하락위험, 신용위험, 유동성위험 등이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예상액(97.5% VaR 모형 사용) : 42.06%]**을 기준으로 투

자위험 투자위험 6등급 중 **2등급**에 해당하는 **높은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높은 수준의 투자수익을 추구하고 그에 따른 높은 수준의 투자위험**을 감내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 상기 위험등급 적용을 위해 산출한 실제 수익률 변동성(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 예상액)은 추후 이 투자신탁의 결산시마다 재측정하게 되며, 이 경우 투자위험등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위험등급 기준은 한화자산운용㈜의 자체적인 기준으로서 투자자가 판단하는 기준 또는 판매회사의 기준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화자산운용 투자위험등급 기준〉

상기의 위험등급은 설정기간 3년이 경과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수익률 변동성(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예상액)으로 등급분류기준이 변경되면서 투자위험등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등급	신규 및 설정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1등급 (매우 높은 위험)	① 레버리지 등 수익구조가 특수하여 투자시 주의가 필요한 집합투자기구 ② 최대손실률이 20%를 초과하는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2등급 (높은 위험)	① 고위험자산에 8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3등급 (다소 높은 위험)	① 고위험자산에 80%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최대손실률이 20% 이하인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4등급 (보통 위험)	① 고위험자산에 50%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중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5등급 (낮은 위험)	① 저위험자산에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수익구조상 원금보존추구형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6등급 (매우 낮은 위험)	①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② 단기 국공채 등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 "고위험자산"은 주식, 상품, REITs, 투기등급(BB+등급 이하), 파생상품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 - "중위험자산"은 채권(BBB-등급 이상), CP(A3등급 이상), 담보부 대출 및 대출채권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 - "저위험자산"은 국공채, 지방채, 회사채(A-등급 이상), CP(A2-등급 이상), 현금성 자산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 - 상기 분류기준 이외에 투자전략, 신용위험, 유동성위험, 레버리지 수준, 환위험(환헷지 50% 미만 등) 등을 고려하여 위험등급을 조정할 수 있음

설정된 후 3년이 경과한 경우 - 시장위험 등급 기준표 (97.5% VaR 모형* 사용)

구분	1등급 (매우 높은 위험)	2등급 (높은 위험)	3등급 (다소 높은 위험)	4등급 (보통 위험)	5등급 (낮은 위험)	6등급 (매우 낮은 위험)
97.5% VaR (일간수익률의 최대 손실 예상액)	50% 초과	50% 이하	30% 이하	20% 이하	10% 이하	1% 이하

* 과거 3년 일간 수익률에서 2.5퍼센타일에 해당하는 손실률의 절대값에 연환산 보정계수($\sqrt{250}$)를 곱해 산출

* VaR(Value at Risk)는 포트폴리오 손실 위험 측정을 위해 이용되는 위험 측정수단입니다. 상기 표상 VaR값 OO%의 의미는 펀드의 과거 3년 동안 일간수익률을 고려 시 최대 OO%의 손실(신뢰구간 97.5%)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 이 위험등급분류는 한화자산운용의 내부 기준에 따른 위험등급입니다. 판매회사는 판매회사별 특성을 반영하여 위험등급을 재분류할 수 있습니다.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1) 매입방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하시려면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영업시간 중에 매입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판매회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매입도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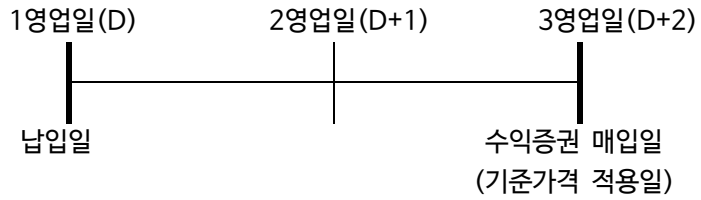
(2) 종류별 가입자격

이 투자신탁의 가입가능 한 수익증권의 종류 및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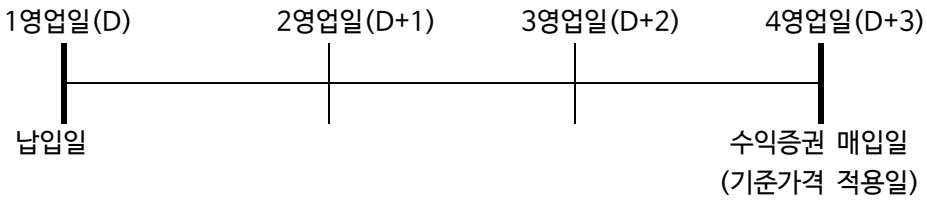
종류	가입자격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가입자격 제한없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가입자격 제한없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I)	납입금액 50억원 이상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 펀드 등(C-F)	집합투자기구, 변액보험계약, 기관투자자 및 기금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C-w)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 금전신탁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3)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가) **오후 3시 이전**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3영업일(D+2)에 공고되는 수익증권 기준가격** 적용



(나) **오후 3시 경과 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4영업일(D+3)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



- 판매회사가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매입업무를 처리한 경우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을 매입청구를 받은 시간으로 봅니다.
- 영업일은 판매회사의 영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단,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은 1,000원으로 합니다.

나. 환매

(1) 수익증권의 환매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시려면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환매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판매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한 경우나 인터넷뱅킹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한 환매도 가능합니다.

※ 환매가능여부 및 환매수수료 부과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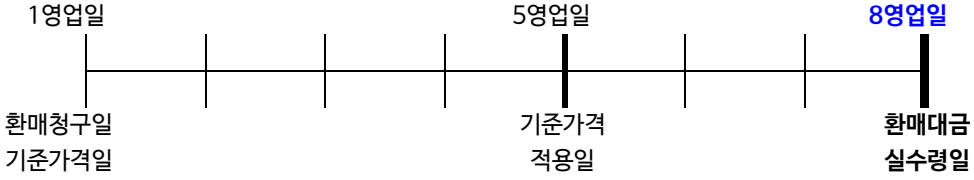
중도환매 불가	중도 환매시 비용 발생	중도환매 허용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O

(2)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가) 오후 3시 이전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4영업일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7영업일에 환매금액 지급



(나) 오후 3시 경과 후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5영업일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8영업일에 환매금액 지급



- 판매회사가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환매업무를 처리한 경우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을 환매청구를 받은 시간으로 봅니다
- 영업일은 한국거래소의 개장일을 말합니다. 다만, 환매청구일이 판매회사의 영업일이면서 한국거래소의 개장일이 아닌 경우(토요일은 제외)에는 그 환매청구일을 영업일에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3) 환매수수료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환매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4)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등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은 매입청구일 및 환매청구일 15시[오후 3시]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15시[오후 3시] 경과 후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를 한 경우에는 당일 17시까지만 매입청구 또는 환매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이 가능합니다.

(5) 수익증권의 일부환매
수익자는 보유한 수익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수익증권의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5영업일 전일(15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하는 경우에는 6영업일 전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②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7)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 법령과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금액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연기한 날부터 6주 이내에 수익자총회에서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 시행령 제257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결의하여야 합니다.

※ 환매연기사유
① 투자신탁재산의 처분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
②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환매를 청구 받거나 요구받은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해산 등으로 인하여 수익증권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
④ ① 내지 ③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에서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환매에 관하여 정한 사항의 실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총회에서 환매에 관한 사항이 의결되거나 환매를 계속 연기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 사항을 수익자에게 통지합니다.
1. 수익자총회에서 환매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경우
가. 환매에 관하여 의결한 사항
나, 기타 법 시행령 제257조제2항에서 정한 사항
2. 환매연기를 계속하는 경우
가. 환매를 연기하는 사유
나. 환매를 연기하는 기간
다. 환매를 재개하는 경우 환매대금의 지급방법
라. 기타 법 시행령 제257조제3항에서 정한 사항
- 환매연기사유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소되어 환매를 재개할 수 있을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가 연기된 수익자에 대하여 환매한다는 뜻을 통지하고 법 시행령 제25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8) 수익증권의 부분환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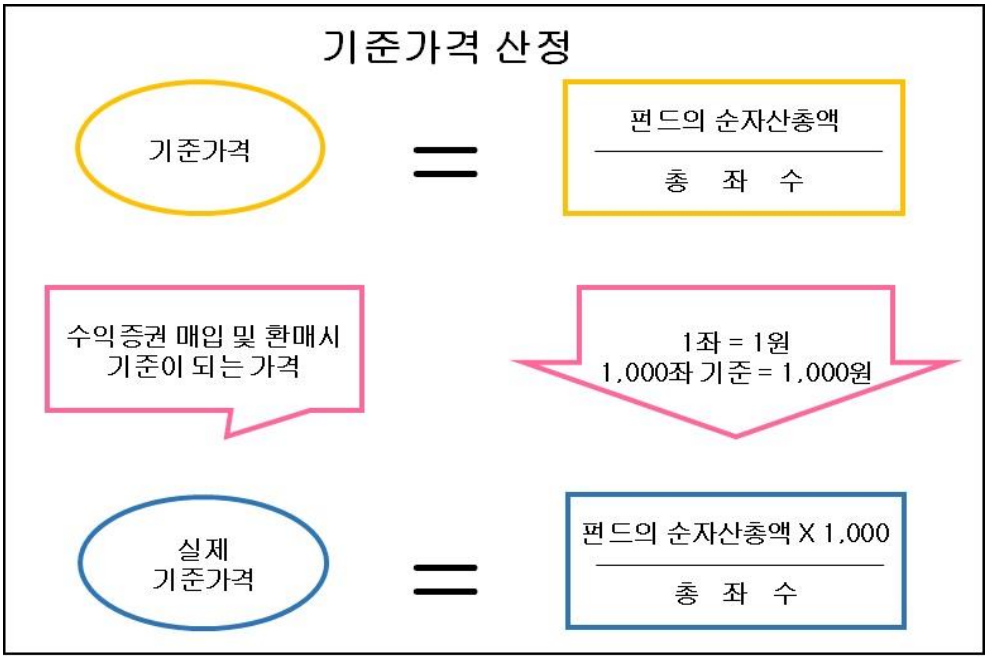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일부가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환매가 연기된 투자신탁재산만으로 별도의 투자신탁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분	내용
산정방법	당일 공고되는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직전일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순자산총액]'이라 합니다)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1,000좌(1좌당 1원)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없는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산정하지 아니합니다.
공시주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없는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공고·게시하지 아니합니다.
공시장소	판매회사 영업점, 집합투자업자(www.hanwhafund.co.kr)·판매회사·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인터넷 홈페이지
종류별 기준가격이 다른 이유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수익증권의 종류(Class)별로 기준가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1) 공휴일, 국경일 등 집합투자업자가 영업을 하지 않는 날에는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해외의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의 경우 기준가격이 산정·공시되지 않는 날에도 해외시장의 거래로 인한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펀드재산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1)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시가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자산은 관계법령에 의한 가격을 기초로 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합니다.

주요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자산	평가방법
①상장주식 및 주식예탁증권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해외 증권시장 포함)에서 거래된 최종시가(해외 증권의 경우 전날의 최종시가)
②장내파생상품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파생상품시장(해외 파생상품시장 포함)에서 공표하는 가격(해외 파생상품의 경우 전날의 가격)
③상장채무증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월간 계속 매월 10일 이상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무증권에 한한다)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 등을 기초로 한 가격
④해외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무증권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⑤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모자형집합투자기구의 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에 산출된 기준가격). 다만, 한국거래소에 상장되고 국내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한 국내주식 관련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ETF)은 다음에 따름 1. 종가괴리율[주1)]이 ±2% 범위 이내일 경우: 한국거래소 최종시가 2. 종가괴리율이 ±2% 범위 초과일 경우: 평가기준일에 공시된 최종 NAV(순자산가치)
⑥외국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의 최근일에 공고된 그 외국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다만, 외국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외국집합투자증권은 그 외국집합투자증권이 거래되는 외국의 시장에서 거래된 전날의 최종시가
⑦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자산 (비상장주식, 비상장채무증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평가한 가격 1. 취득가격 2. 거래가격 3. 채권평가회사, 회계법인, 신용평가업자, 감정평가업자, 투자매매업자 등이 제공한 가격
⑧장외파생상품 및 파생결합증권	금융감독원에 신고한 방식으로 산정된 가격 - 상품의 리턴이 기초자산의 가격변화에 연동되는 파생상품으로서 시초매매가 상품의 만기시까지 유지되는 상품: 발행회사 및 채권평가회사2곳이 제공하는 평균 가격 중 낮은 가격 - 상품의 리턴이 기초자산의 가격변화에 연동되는 파생상품으로서, 상품의 만기전에 비정기적으로 매매가 예상되는 상품: 2개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의 단순산술평균
⑨외화표시자산의 평가시 한국원화로 환산하는 환율	평가일에 외국환중개회사에서 제공하는 최근 거래일의 환율정보를 이용한 환율

주1) 종가괴리율: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한국거래소 최종시가/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기준일에 공시된 최종 NAV(순자산가치)-1] × 100

(2)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업무

1) 구성: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업무 담당임원,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업무 담당임원, 준법감시인, 리스크관리팀장 등

2) 업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채권평가회사의 선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 등의 분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의 종류별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
- 미수금 및 미지급금 등의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 사전자산배분기준에 관한 사항
- 기타 집합투자재산 평가에 관한 사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1) 이 투자신탁은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게 되며, 가입자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수 및 수수료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판매회사는 판매보수 및 수수료와 관련하여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하고 설명하여야 합니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table>
<tr><th rowspan="2">명칭
(클래스)</th><th colspan="4">수수료</th></tr>
<tr><th>선취판매주1)</th><th>환매</th><th>후취판매 주2)</th><th>전환</th></tr>
<tr><td>수수료선취-오프라인(A)</td><td>납입금액의
1.0% 이내</td><td rowspan="6">-</td><td rowspan="2">-</td><td rowspan="6">-</td></tr>
<tr><td>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td><td rowspan="5">-</td></tr>
<tr><td>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I)</td></tr>
<tr><td>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 펀드 등(C-F)</td></tr>
<tr><td>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C-w)</td></tr>
<tr><td>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td><td>3년 미만 환매금액의
0.15% 이내</td></tr>
</table>

주1) 선취판매수수료율은 상기 범위에서 판매회사가 정하며, 판매회사별로 달리 적용할 수 있습니다. 판매회사별 선취판매수수료율은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판매회사가 선취판매수수료율을 달리 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적용 1일 전까지 집합투자업자 및 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주2) 종류 S수익증권에 대한 후취판매수수료율은 3년미만 환매시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매수일로부터 환매기준가격 적용일까지)별로 환매금액의 0.15% 이내 범위에서 판매회사가 정하며, 판매회사별로 달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table>
<tr><th rowspan="2">명칭
(클래스)</th><th colspan="9">지급비율(연간,%)</th></tr>
<tr><th>집합투자업자보수</th><th>판매회사보수</th><th>신탁업자보수</th><th>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th><th>총보수</th><th>기타비용</th><th>합성 총 보수·비용</th><th>동종유형 총보수</th><th>증권 거래비용</th></tr>
<tr><td>수수료선취-오프라인(A)</td><td>0.82</td><td>0.61</td><td>0.04</td><td>0.03</td><td>1.50</td><td>-</td><td>1.5006</td><td>1.73</td><td>-</td></tr>
<tr><td>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td><td>0.82</td><td>1.10</td><td>0.04</td><td>0.03</td><td>1.99</td><td>-</td><td>1.9906</td><td>1.87</td><td>-</td></tr>
<tr><td>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I)</td><td>0.82</td><td>0.31</td><td>0.04</td><td>0.03</td><td>1.20</td><td>-</td><td>1.2000</td><td>-</td><td>-</td></tr>
<tr><td>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 펀드 등(C-F)</td><td>0.82</td><td>0.03</td><td>0.04</td><td>0.03</td><td>0.92</td><td>-</td><td>0.9200</td><td>-</td><td>-</td></tr>
<tr><td>수수료미징구-</td><td>0.82</td><td>0.0</td><td>0.04</td><td>0.03</td><td>0.890</td><td>-</td><td>0.8900</td><td>-</td><td>-</td></tr>
</table>

명칭 (클래스)	지급비율(연간, %)								
	집합투자 업자보수	판매회사 보수	신탁업자 보수	일반사무 관리회사 보수	총보수	기타 비용	합성 총 보수·비용	동종유형 총보수	증권 거래비용
오프라인-랩 (C-w)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0.82	0.35	0.04	0.03	1.24	-	1.2406	-	-
지급시기	매3개월 후급	매3개월 후급	매3개월 후급	매3개월 후급	매3개월 후급	사유발생시 (주1 참조)	-	-	사유발생시 (주2 참조)

주1) 기타비용은 회계감사비용,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 (증권거래비용 및 금융 비용 제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2024.02.21 ~ 2025.02.20)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기타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구분	금액(직전 회계기간 중 발생내역, 단위: 천원)
기타비용	9

주2)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구분	금액(직전 회계기간 중 발생내역, 단위: 천원)
증권거래비용	-

주3)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 관련 비용의 종류 및 내역

① 기타비용 종류: 채권평가보수, 펀드평가보수, 펀드결제수수료, 지수사용료, 감사보수, 기타위탁보수(보관대리인보수, 지급대리인보수), 대차거래비용(대차관련수수료), repo거래비용(repo 수수료), 기타비용(해외거래예탁비용, 해외원천납부세액) 등 (단, 세부지출내역은 펀드별로 상이할 수 있음)

② 증권거래비용 종류: 주식·채권·수익증권·파생상품·기타 증권 등 자산매매수수료 등(단, 세부지출내역은 펀드별로 상이할 수 있음)

③ 금융비용 종류: 상기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을 제외한 이자비용 등이 있으며, 금융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분	금액(직전 회계기간 중 발생내역, 단위: 천원)
금융비용	-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단위: 천원)

구분	1년	2년	3년	5년	10년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252	412	580	941	2,015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204	418	643	1,127	2,566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I)	123	252	388	680	1,547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 펀드 등(C-F)	94	193	297	521	1,186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C-w)	91	187	288	504	1,147

수수료후취- 온라인슈퍼(S)	127	261	401	703	1,599

주1)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선취판매수수료(1.0%) 및 총 보수·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선취판매수수료율 및 총 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종류S 수익증권은 환매시점에 후취판매수수료 부담여부 및 후취판매수수료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류S 수익증권의 후취판매수수료는 반영하지 않고 작성이 되었습니다.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 배분

집합투자업자는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당해 종류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익 영업일에 분배하며 수익자는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법 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및 법 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매매이익에 해당하는 이익금은[주1] 분배를 유보하며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합니다.

주1) 수익자가 환매시에 유보된 누적 평가이익 및 매매이익이 일시에 과세가 되어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대상자가 되어 세제상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환매후 재매입을 하여 과세기간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등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과세에 따른 일시 집중효과를 예방 가능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이익분배금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매수

- 수익자는 수익자와 판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당해 종류 수익증권 기준가격으로 당해 종류 수익증권을 매수합니다.

- 이익분배금으로 당해 종류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판매회사는 수익자별 매수 수익증권의 합계수량을 집합투자업자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 매수금액의 납입이 완료된 때에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합니다.

(2) 상환금 등의 지급

-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지체없이 신탁업자로 하여금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지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판매회사는 신탁업자로부터 인도받은 상환금 등을 지체없이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으로 수익자에게 상환금 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3) 이익분배금 및 상환금 등의 시효

-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을 수익자가 그 지급개시일로부터 5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하고 판매회사에 귀속됩니다.
- 신탁업자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을 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나. 과세

(1)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 투자신탁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을 연장하는 날 포함)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 집합투자기구에서 외국납부세액 발생 시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외국납부세액 환급 절차가 없으며, 원천징수의무자(판매사 등)가 수익자에게 집합투자기구 소득 지급 시 수익자가납부할 세액(이자·배당소득)에서 수익자별 외국납부공제 금액을 차감하여 원천징수 합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
- 발생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원천징수 원칙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되는 날 포함)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양도(전자증권법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에 의하여야 함)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자는 과표기준가격을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과표기준가격이란 세금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가격으로 신탁재산의 운용수익 중 채권이자에 대한 이자소득, 채권의 매매·평가차익, 주식의 배당에 대한 배당소득등 과세대상 수익만을 고려하여 산출합니다. 이는 판매회사 영업점, 집합투자업자 · 판매회사 · 협회 인터넷홈페이지 등에서 기준가격과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투자대상 자산(상장주식 등)의 매매·평가 손실로 인하여 투자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과세대상이 되는 투자대상 자산(채권의 매매·평가차익, 주식의 배당에 대한 배당소득 등)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서는 과세되므로 수익자 입장에서 투자손실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될 수 있습니다.

※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을 통한 가입자에 대한 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7에 따른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을 통해 이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이 투자신탁으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해외상장주식의 매매·평가 손익(환율변동에 의한 손익을 포함한다)은 투자자의 과세대상 이익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상장주식 등에 대한 손익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채권이자, 주식배당, 환헤지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 등은 과세대상이익이므로,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손실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과세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비과세 대상인 국내외 상장주식 등의 매매·평가 손실 및 해외상장주식 매매·평가시 환차손이 과세대상 이익인 채권이자, 주식배당, 환헤지 거래 등에서 발생하는 이익보다 큰 경우 투자손실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과세대상 이익에 대해 과세함

[환헤지 거래를 수행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유의사항]
환헤지 거래를 수행하는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원금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환헤지 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여전히 과세대상 이익이므로 상황에 따라서는 세금 측면에서 중대하고 불리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개인 및 일반법인 15.4% (지방소득세 포함)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는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5.4%(법인세 14%, 법인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소득과 다른 소득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게 됩니다.

(4)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자에 대한 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7에 따른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을 통해 이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이 투자신탁으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해외상장주식의 매매·평가 손익(환율변동에 의한 손익을 포함한다)은 투자자의 과세대상 이익에서 제외 됨. 자세한 관련사항은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자에 대한 과세 주요 사항]

구분	주요 내용
가입기한	2017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도	1인당 3천만원(모든 금융회사 등에 가입한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 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대상펀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해외상장주식에 60%이상 투자하는 펀드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
세제혜택	해외상장주식의 매매·평가 손익(환율변동에 의한 손익 포함)은 과세대상 이익에서 제외
세제혜택적용기간	가입일부터 10년까지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이 투자신탁의 재무제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중 투자신탁에 관한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동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법인 및 감사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 간	회계감사법인	감사의견
제17기(2023.02.21 ~ 2024.02.20)	회계감사면제	해당없음
제18기(2024.02.21 ~ 2025.02.20)	회계감사면제	해당없음
제19기(2025.02.21 ~ 2026.02.20)	회계감사면제	해당없음

가. 요약재무정보 (단위: 원, %)

요약재무상태표			
항 목	제 19 기	제 18 기	제 17 기
	2026.02.20	2025.02.20	2024.02.20
운용자산	1,527,113,871	1,216,960,693	1,154,571,212
유가증권	1,409,838,113	1,114,367,218	1,117,527,636
파생상품	0	0	0
부동산/실물자산	0	0	0
현금 및 예치금	117,275,758	102,593,475	37,043,576
기타 운용자산	0	0	0
기타자산	48,346,657	3,001,263	-27,665,250
자산총계	1,575,460,528	1,219,961,956	1,126,905,962
운용부채	0	0	0
기타부채	41,501,461	23,933,212	4,511,063
부채총계	41,501,461	23,933,212	4,511,063
원본	773,056,411	839,095,821	919,480,889
수익조정금	0	0	0
이익조정금	760,902,656	356,932,923	202,914,010
자본총계	1,533,959,067	1,196,028,744	1,122,394,899

요약손익계산서			
항 목	제 19 기	제 18 기	제 17 기
	2026.02.20	2025.02.20	2024.02.20
운용수익	476,473,078	170,867,248	261,913,874
이자수익	475,208	272,149	1,576,903
배당수익	14,472,112	14,800,670	19,845,494
매매평가차손익	461,525,758	153,480,609	237,900,817
기타수익	0	2,313,820	2,590,660
운용비용	22,919,541	23,019,325	24,562,551
관련회사보수	20,318,163	17,899,852	18,263,734
매매수수료	0	0	0
기타비용	2,601,378	5,119,473	6,298,817
당기순이익	453,553,537	147,847,923	237,351,323
매매회전율	84	144	118

주) 요약재무정보 사항중 매매회전율이란 주식매매의 빈번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해당 운용기간동안 매도한 주식가액을 같은 기간동안 평균적으로 보유한 주식가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1회계년도 동안의 평균적인 주식투자규모가 100억원이고, 주식매도금액 또한 100억원인 경우 매매회전율은 100%(연기준)로 합니다.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 (단위: 원, %)

자산유형별 거래비용						
구분	당해 연도			전년도		
	거래금액(A)	거래비용		거래금액(A)	거래비용	
		금액(B)	거래비용 비율(B/A)		금액(B)	거래비용 비율(B/A)
주식	1,790,374,886	1,432,037	0.0800	2,803,783,701	2,242,466	0.0800
주식 이외의 증권	0	0	0.0000	0	0	0.0000
장내파생	0	0	0.0000	0	0	0.0000
장외파생	0	0	0.0000	0	0	0.0000
부동산	0	0	0.0000	0	0	0.0000
기타(레포,대차,콜 등)	0	0	0.0000	0	0	0.0000
합 계	1,790,374,886	1,432,037	0.0800	2,803,783,701	2,242,466	0.0800

주 1) 주식 중개수수료 등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기재하되, 장외 채권거래와 같이 별도 수수료 미발생 등의 사유로 거래비용의 객관적인 산출이 어렵거나 부동산 등과 같이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항목(수익적 지출 등 비용으로 산정되는 항목은 기재)은 작성을 생략합니다.

주 2) 장외파생상품 거래의 경우 대부분 거래금액에 거래비용이 포함되어 거래되므로 거래비용이 별도로 구분 기재되지 않을 수 있으며 그로 인해 거래비용비율이 정확하게 산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식의 매매회전율〉 (단위: 주, 원, %)

매매회전율						
주식 매수		주식 매도		당해연도 보유 주식의 평균가액(B)	매매회전율(A/B)	동종 유형 평균 매매회전율
수량	금액	수량	금액			
17,825	830,731,083	19,649	959,643,803	1,140,441,313	84.14671	-

나. 재무상태표 (단위: 원)

항 목	제 19 기	제 18 기	제 17 기
	2026.02.20	2025.02.20	2024.02.20
운용자산	1,527,113,871	1,216,960,693	1,154,571,212
현금및예치금	117,275,758	102,593,475	37,043,576
현금및현금성자산	22,267,197	24,574,508	15,551,838
기타예금	95,008,561	78,018,967	21,491,738
유가증권	1,409,838,113	1,114,367,218	1,117,527,636
지분증권	1,409,838,113	1,114,367,218	1,117,527,636
기타자산	48,346,657	3,001,263	-27,665,250
미수이자	9,494	33,625	21,005
미수배당금	529,294	579,554	1,426,044
선납세	0	2,313,820	2,590,660
외화환산손익조정	0	0	-31,702,959
기타미수입금	47,807,869	74,264	0

자 산 총 계	1,575,460,528	1,219,961,956	1,126,905,962
기타부채	41,501,461	23,933,212	4,511,063
매수유가증권미지급금	34,854,556	0	0
미지급운용수수료	2,842,578	2,326,344	2,127,536
미지급판매수수료	2,468,541	1,999,558	1,806,444
미지급수탁수수료	138,539	113,371	103,658
미지급사무수탁수수료	103,873	84,982	77,714
수수료미지급금	207,340	25,470	395,711
기타미지급금	886,034	19,383,487	0
부 채 총 계	41,501,461	23,933,212	4,511,063
원 본	773,056,411	839,095,821	919,480,889
이익잉여금	760,902,656	356,932,923	202,914,010
자 본 총 계	1,533,959,067	1,196,028,744	1,122,394,899
부채 및 자본 총계	1,575,460,528	1,219,961,956	1,126,905,962
총좌수	589,881,290	643,140,623	711,674,486
기준가격	2,587.02	1,844.52	1,565.14

다. 손익계산서 (단위: 원)

항 목	제 19 기 2025.02.21 ~ 2026.02.20	제 18 기 2024.02.21 ~ 2025.02.20	제 17 기 2023.02.21 ~ 2024.02.20
운용수익(운용손실)	476,473,078	170,867,248	261,913,874
투자수익	14,947,320	15,072,819	21,422,397
이자수익	475,208	272,149	1,576,903
배당금수익	14,472,112	14,800,670	19,845,494
매매차익과 평가차익	588,231,794	594,975,225	633,167,994
지분증권매매차익	128,499,445	150,348,659	222,957,380
외환거래매매차익	57,372,417	83,378,198	152,108,365
지분증권평가차익	402,359,932	353,200,401	258,102,249
외환거래평가차익	0	8,047,967	0
매매차손과 평가차손	126,706,036	441,494,616	395,267,177
지분증권매매차손	55,962,164	68,784,586	31,513,977
외환거래매매차손	36,346,730	99,096,557	159,756,760
지분증권평가차손	31,276,382	273,613,473	172,293,481
외환거래평가차손	3,120,760	0	31,702,959
기타운용수익	0	2,313,820	2,590,660
운용비용	22,919,541	23,019,325	24,562,551
운용수수료	10,447,395	9,239,472	9,489,229
판매수수료	8,979,948	7,872,679	7,965,471

수탁수수료	509,122	450,197	462,394
사무수탁수수료	381,698	337,504	346,640
기타운용비용	2,601,378	5,119,473	6,298,817
당기순이익(당기순손실)	453,553,537	147,847,923	237,351,323
좌당순이익(좌당순손실)	714.83	219.25	278.57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단위: 백만좌, 백만원)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3/02/21~ 2024/02/20	1,143	1,057	0	0	451	474	692	829
2024/02/21~ 2025/02/20	692	829	4	5	63	80	632	890
2025/02/21~ 2026/02/20	632	890	4	6	66	112	571	1,12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3/02/21~ 2024/02/20	217	199	1	1	23	24	195	231
2024/02/21~ 2025/02/20	195	231	0	0	11	14	185	255
2025/02/21~ 2026/02/20	185	255	0	0	2	2	183	351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3/02/21~ 2024/02/20	37	56	4	7	9	15	32	63
2024/02/21~ 2025/02/20	32	63	8	17	18	33	22	51
2025/02/21~ 2026/02/20	22	51	8	19	10	26	19	62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다음의 투자실적은 이 투자신탁의 과거 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실적 추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된 것으로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수익률을, 연도별 수익률은 기간별 수익률 변동성을 나타낸 것입니다. 연평균 수익률 및 연도별 수익률에 관한 정보는 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의 작성기준일로 산정한 수익률로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가. 연평균 수익률 (세전기준, 단위: %)

기간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 이후
	2025/03/04~ 2026/03/03	2024/03/04~ 2026/03/03	2023/03/04~ 2026/03/03	2021/03/04~ 2026/03/03	
한화재팬코아증권투자신탁1호(주식)	51.04	31.38	32.05	18.17	6.39
비교지수	40.49	21.57	25.60	16.13	4.33
수익률변동성(%)	21.24	20.68	18.69	17.81	18.92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48.93	29.50	30.16	16.45	4.81
비교지수	40.49	21.57	25.60	16.13	4.33
수익률변동성(%)	21.28	20.72	18.73	17.85	18.95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48.25	28.89	29.55	15.89	4.06
비교지수	40.49	21.57	25.60	16.13	4.33
수익률변동성(%)	21.29	20.73	18.74	17.86	18.97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49.30	29.82	30.48	16.75	13.05
비교지수	40.49	21.57	25.60	16.13	10.89
수익률변동성(%)	21.27	20.71	18.72	17.84	17.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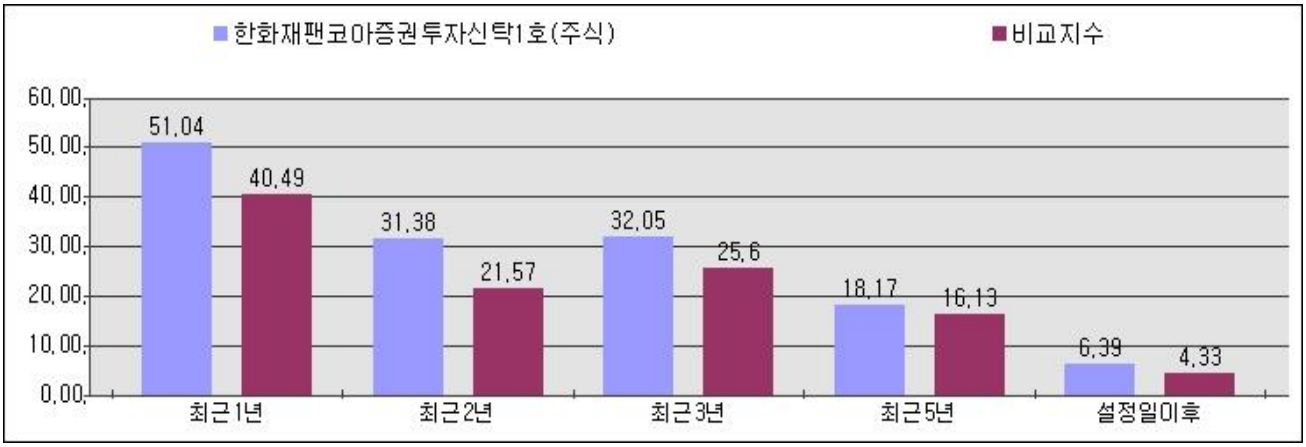
주1) 비교지수: TOPIX(KRW에 대해 헷지) 90%, 매경BP Call 10%

주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3)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 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4) 종류형투자신탁의 경우 연평균수익률 그래프는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전체)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투자신탁(전체)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등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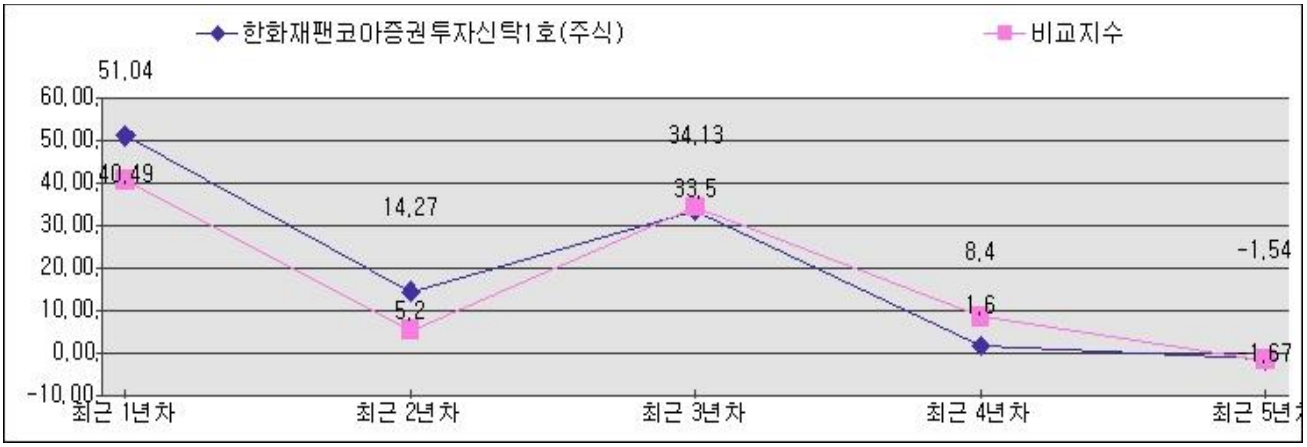
주5)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 (세전기준, 단위: %)

기간	최근 1년차	최근 2년차	최근 3년차	최근 4년차	최근 5년차
	2025/03/04~2026/03/03	2024/03/04~2025/03/03	2023/03/04~2024/03/03	2022/03/04~2023/03/03	2021/03/04~2022/03/03
한화재팬코아증권투자신탁1호(주식)	51.04	14.27	33.5	1.6	-1.54
비교지수	40.49	5.2	34.13	8.4	-1.67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48.93	12.59	31.58	0.11	-3.03
비교지수	40.49	5.2	34.13	8.4	-1.67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48.25	12.05	30.96	-0.37	-3.51
비교지수	40.49	5.2	34.13	8.4	-1.67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49.3	12.88	31.91	0.37	-2.77
비교지수	40.49	5.2	34.13	8.4	-1.67

주1) 비교지수: TOPIX(KRW에 대해 헷지) 90%, 매경BP Call 10%
주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3)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수익률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주4)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미만인 경우(예: 8개월)로서 주식 또는 주식관련 상품(주가지수연계증권 등)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수익률인 '기간 수익률'을 말합니다.
주5)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미만인 경우(예: 8개월)로서 주식 또는 주식관련 상품(주가지수연계증권 등)에 투자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수익률을 연간 수익률로 환산한'연환산 수익률'을 말합니다.
주6) 연도별 수익률은 해당되는 각1년간의 단순 누적수익률로 투자기간동안 이 투자신탁 수익률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7) 종류형투자신탁의 경우 연도별수익률 그래프는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전체)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투자신탁(전체)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등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 구성 현황 (기준일: 2026.03.03, 단위: 백만원, %)

통화별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증권	장내	장외		실물자산	기타			
JPY	1,465	0	0	0	0	-16	0	0	0	60	0	1,509
	(97.09)	(0)	(0)	(0)	(0)	(-1.06)	(0)	(0)	(0)	(3.97)	(0)	(97.56)
KRW	0	0	0	0	0	0	0	0	0	37	1	37
	(0)	(0)	(0)	(0)	(0)	(0)	(0)	(0)	(0)	(98.19)	(1.81)	(2.42)
USD	0	0	0	0	0	0	0	0	0	0	0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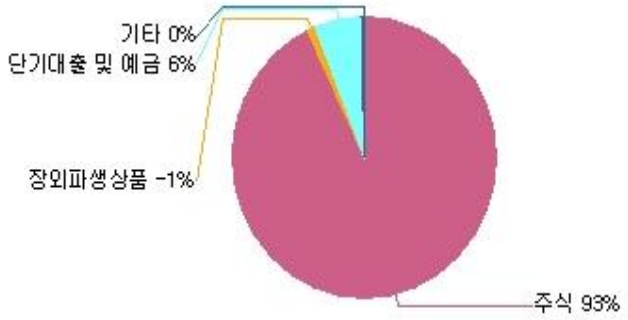
	(0)	(0)	(0)	(0)	(0)	(0)	(0)	(0)	(0)	(100)	(0)	(0.02)
자산합계	1,465	0	0	0	0	-16	0	0	0	97	1	1,547
	(94.72)	(0)	(0)	(0)	(0)	(-1.04)	(0)	(0)	(0)	(6.27)	(0.04)	(100)

주1) () 내는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대비 비중을 나타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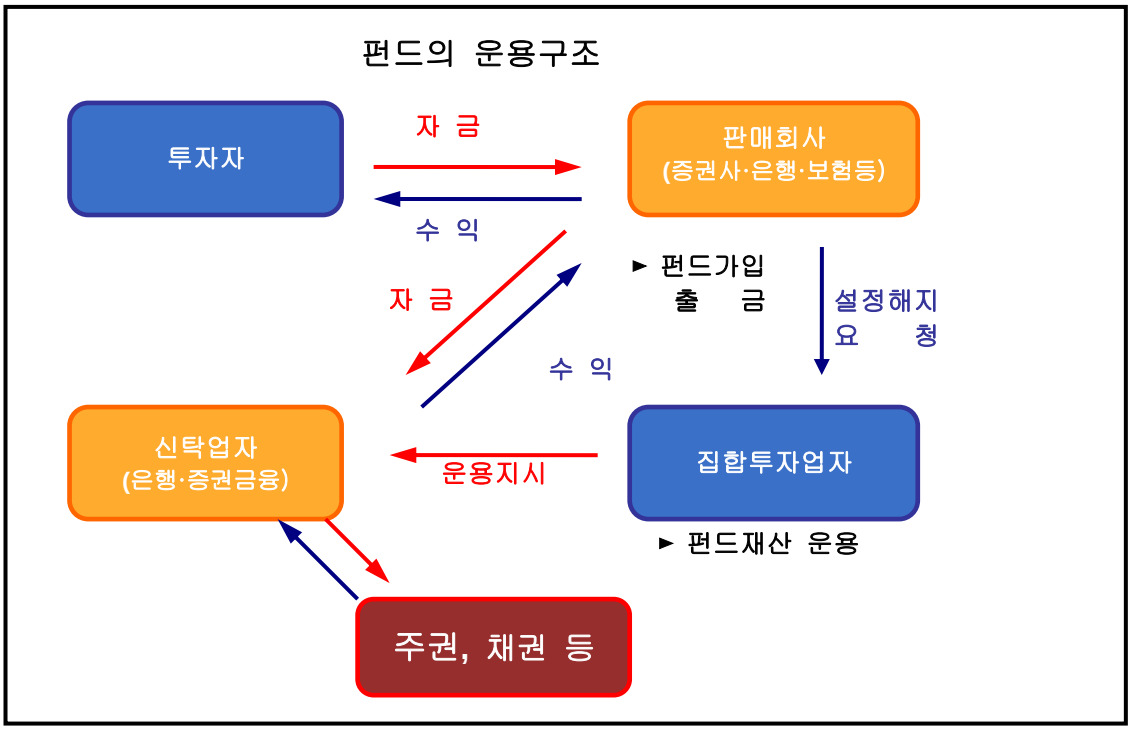
주2) 어음: 양도성예금증서(CD) 및 어음을 말합니다.

주3) 장내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위탁증거금의 합계액을 말하며, 장내파생상품 평가액은 국내/외 파생상품별 구성현황에 기재합니다.

주4) 장외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손익을 말하며, 장외파생상품 평가액(명목계약금액이 있는 경우 명목계약금액을 포함함)은 국내/외 파생상품별 구성현황에 기재합니다.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 개요

회사명	한화자산운용주식회사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63로 50 한화금융센터63 (전화) 02-6950-0000	
홈페이지	www.hanwhafund.co.kr	
회사연혁	2011.09.19 한화자산운용주식회사 출범 (한화투자신탁운용과 푸르덴셜자산운용의 합병) 2018.06.04 제이피모간자산운용코리아㈜ 집합투자업 사업부문 분할합병	
	푸르덴셜자산운용	1982.06 국민투자신탁 설립 1998.02 국민투자신탁운용 설립 (국민투자신탁에서 운용조직 분리) 1999.02 현대투자신탁운용으로 상호 변경 2004.02 미국 Prudential Financial자회사로 편입, 푸르덴셜자산운용으로 상호 변경 2010.06 한화그룹 계열사로 편입
	한화투자신탁운용	1988.04 제일투자자문주식회사 설립 1996.08 한화투자신탁운용주식회사로 상호변경
자본금	1조 700억	

나. 주요 업무

[주요업무]

투자신탁의 설정, 해지 / 투자신탁의 운용, 운용지시 / 투자회사 재산의 운용

[선관의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책임]
집합투자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다. 최근 2개 사업 연도 요약 재무 내용 (단위: 백만원)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항목	제37기 (24.12.31)	제36기 (23.12.31)	항목	제37기 (24.1.1 ~24.12.31)	제36기 (23.1.1 ~23.12.31)
자 산			영업수익	151,890	131,627
현금및현금성자산	50,424	64,128	영업비용	105,418	97,521
예치금	2,517	10,704	영업이익	46,472	34,106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313,830	177,506	영업외수익	45,109	5,018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18,314	25,992	영업외비용	2,965	1,767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투자	1,005,522	1,042,559	법인세차감전	88,616	37,357
대출채권	2,787	2,340	법인세비용	21,040	7,675
유형자산	15,906	13,008	**당기순이익**	**67,576**	**29,682**
무형자산	2,725	2,995			
이연법인세자산	3,959	10,828			
기타금융자산	64,408	63,789			
기타자산	1,710	1,688			
자 산 총 계	**1,482,102**	**1,415,537**			
부 채					
예수부채	2,320	10,691			
충당부채	1,721	1,151			
순확정급여부채	-1,295	-1,912			
당기법인세부채	8,663	3,826			
리스부채	11,649	9,550			
기타금융부채	21,741	16,020			
기타부채	1,017	1,001			
부 채 총 계	**45,816**	**40,327**			
자 본					
자본금	1,070,000	1,070,000			
기타불입자본	3,459	3,459			
기타자본구성요소	-8,507	-2,008			
이익잉여금	371,334	303,758			
자 본 총 계	**1,436,286**	**1,375,209**			

부 채 및 자 본 총 계	1,482,102	1,415,537			

라. 운용자산 규모 (기준일: 2026.03.03, 단위: 억원)

구분	증권집합투자기구							부동산 및 부동산파생	특별자산 및 특별자산 파생	혼합자산 및 혼합자산 파생	단기금융	총 계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계약형	재간접형	파생형	기타					
수탁고	104,334	65,935	11,121	0	52,111	23,482	0	39,125	115,693	12,114	94,745	518,664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지시)업무 수탁회사: 해당사항 없음

나. 기타 업무의 수탁회사

해외 투자자문업자	Mitsubishi UFJ Trust & Banking
자문범위	신탁재산 운용에 대한 포트폴리오 및 리서치 자문
회사주소	4-5 Marunouchi 1-Chome, Chiyoda-ku, Tokyo, Japan

3. 집합투자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신탁업자)

가. 회사의 개요

회사명	한국씨티은행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50(신문로 2가) 1566-1000
홈페이지	www.citibank.co.kr

나. 주요 업무

(1) 주요업무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집합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 배당 · 수익금 · 임대료 등의 수령
무상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수령
증권의 상환금의 수입
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2) 신탁업자의 의무와 책임

(의무)

① 신탁업자 투자자를 위하여 법령, 집합투자규약, 투자설명서, 신탁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그 사항을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당해 운용지시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③ 신탁업자의 확인사항

- 투자설명서가 법령·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의 여부

- 위험관리방법의 작성이 적정한지의 여부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
- 기준가격 산출이 적정한지의 여부
- 운용지시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내역
- 투자신탁재산별 자산배분내역 및 배분결과
-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법시행령 제269조제4항에서 정하는 사항

(책임) 신탁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신탁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의 개요

회사명	하나펀드서비스㈜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02) 6714-4600
홈페이지	www.hanais.com

* 2024.09.02일자로 이 투자신탁의 일반사무관리회사가 신한펀드파트너스㈜에서 하나펀드서비스㈜로 변경.

나. 주요업무

기준가격 계산에 관한 업무 및 보수인출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다.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의무

기준가격 계산의 오류 및 집합투자업자와 맺은 계약의 불이행 등으로 인해 수익자에게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5.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의 개요

구 분	한국자산평가	NICE P&I	KIS 자산평가	FN자산평가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02-2251-13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9 02-398-39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38 02-3215-1400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2로 61 02-721-5300
홈페이지 주소	www.koreaap.com	www.nicepni.com	www.bond.co.kr	www.fnpricing.com

나. 주요업무

채권시가평가 정보 제공, 채권 관련 자료 및 분석도구 제공,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증권 및 파생상품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제공합니다.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수익자총회 등

(1) 수익자총회의 구성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두며, 법령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 수익자에 대하여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2) 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① 수익자총회의 소집

-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합니다. 다만, 신탁업자 또는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는 전자등록기관에 위탁하여야 하며, 전자등록기관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주간 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의결권 행사방법

-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수익자 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에 산입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로부터 제출된 의결권행사를 위한 서면과 의결권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수익자총회일부터 6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서면 및 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간주의결권행사"라 한다)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1. 수익자에게 법시행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2.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
 3.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일 것
 4.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를 것
- 집합투자업자는 상기의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상기의 결의방법을 준용합니다. 이 경우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분의 1 이상"으로 하고,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은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으로 봅니다.

(3)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
- 보수, 수수료의 인상, 신탁업자의 변경,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 투자신탁의 종류의 변경, 주된 투자신탁자산의 변경,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환매금지형투자 신탁으로의 변경,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법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단, 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법 시행령 제225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4) 반대매수청구권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법 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2.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위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청구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매수청구기간의 종료일에 환매청구한 것으로 보아 그 수익증권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나. 잔여재산분배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지체없이 신탁업자로 하여금 투자신탁 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등”이라 한다)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지급하며, 판매회사는 신탁업자로부터 인도받은 상환금등을 지체없이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으로 수익자에게 상환금 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대하여 영업시간 내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당해 수익자에 관련된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장부 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 하지 못합니다.
- 수익자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집합투자재산 명세서 / 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대장 /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 집합투자재산 운용내역서

라. 손해배상책임
- 집합투자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신탁업자, 일반사무관리회사,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수익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 증권신고서 (정정신고 및 첨부서류 포함)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와 간이투자설명서 포함)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집합투자증권의 취득자가 그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 당시의 발행인의 이사 등 법 제125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마. 재판관할

-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이 상품의 집합투자규약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기준가격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변동 등은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 투자신탁의 피흡수 합병 /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 수익자의 총수가 1 인이 되는 경우 (다만, 법 제6조 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나. 임의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집합투자규약 제 45 조 제 1 항 제 3 호 내지 제 4 호의 사유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 사항을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 투자신탁을 설정한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영업보고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아래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1)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2) 집합투자재산의 운용현황과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표
 3)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내용 및 그 사유를 기재한 서류

4)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별 거래금액 · 수수료와 그 비중

[결산서류]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2)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3)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또는 해산

[회계감사]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대하여 회계기간의 말일 및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일부터 2개월 이내에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회계기간의 말일과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일을 기준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이 300억원 이하인 경우
2)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이 3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인 경우로서 회계기간의 말일과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일 이전 6개월간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자산운용보고서

-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당해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 보고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회계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이 종료되는 날, 회계기간의 말일, 계약기간의 종료일, 해지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기준일) 현재의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자산 · 부채 및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 직전의 기준일부터 해당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기간 중의 손익사항
 - 기준일 현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집합투자재산 총액에 대한 각각의 비율
 -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회전율
 - 기준일 현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내용
 -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운용인력에 관한 사항. 다만, 회계기간 개시일로부터 3개월, 6개월, 9개월이 종료되는 날을 기준일로 하여 작성하는 자산운용보고서에는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 집합투자기구의 투자환경 및 운용계획
 - 집합투자기구의 업종별 · 국가별 투자내역
 - 집합투자기구의 결산 시 분배금 내역(결산 후 최초로 작성하는 자산운용보고서로 한정한다)
 -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범위 상위 10개 종목
 -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다만, 회계기간 개시일로부터 3개월, 6개월, 9개월이 종료되는 날을 기준일로 하여 작성하는 자산운용보고서에는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 집합투자기구가 환위험을 회피할 목적으로 파생상품을 거래하는 경우 그 거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투자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 · 전신 · 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2)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매월 1회 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금융

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3)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3개월마다 1회 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4)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집합투자규약에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3) 자산보관·관리보고서

- 신탁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등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1) 집합투자규약의 주요 변경사항
 2)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3) 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등
 4) 법 제247조 제5항의 확인사항
 5) 법 시행령 제270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

-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투자자가 자산보관·관리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2)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신탁업자가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신탁업자, 판매회사, 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경우
 3)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집합투자규약에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제공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4) 기타장부 및 서류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1)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1.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2. 신탁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6조에서 정한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제외)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 (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4. 투자신탁종류의 변경
5.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6.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가. 합병·분할·분할합병
 나. 법 제420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융위원회의조치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다.「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7.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8.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신탁계약에 규정된 사항 중 법령 등의 변경으로 그 적용이 의무화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바에 따릅니다.

집합투자업자가 신탁계약 변경에 대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한 날부터 1월 이내에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령 등의 변경으로 그 적용이 의무화된 경우 및 신탁계약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법령 또는 금융감독원장의 명령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수시공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행한 경우 지체없이 집합투자업자 (www.hanwhafund.co.kr) ·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 공시, 집합투자업자 · 판매회사의 본 · 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 및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한다)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3.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4. 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5.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집합투자규약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123조제3항제2호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6.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 양수
7.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법 시행령 제262조제1항 후단에 따라 공고·게시하는 경우에 한한다)
8.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한다)로서 설정 및 설립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9.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한다)로서 설정 및 설립 이후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10. 그 밖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에 따라 공시해야 합니다.

- 합병, 영업의 양도 · 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투자자의 이익에 명백한 영향으로 미치는 주요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법 제87조제7항에 따른 의결권 공시대상법인인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직전 연도 4월1일부터 1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내용 등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공시할 것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기간: 2025.03.04 ~ 2026.03.03)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해당사항 없음

나.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다. 투자중개업자 선정 기준

<table>
<tr><th>구 분</th><th>투자중개업자의 선정기준</th></tr>
<tr><td>가. 증권 거래</td><td rowspan="2">
<table>
<tr><th>평가항목</th><th>자산분석서비스의 유용성 (운용 기여도)</th><th>주문집행능력</th><th>비용 또는 수익</th><th>합계</th></tr>
<tr><td>항목 가중치</td><td>60%</td><td>20%</td><td>20%</td><td>100%</td></tr>
</table>
* 각 평가항목은 5척도(A, B, C, D, E)로 평가

* 각 등급별 투자중개업자의 비율은 A(15%), B(20%), C(30%), D(20%), E(15%)를 원칙, 상하 5% 범위 이내 조정

* 각 평가자가 평가한 5척도의 환산점수는 A(10점), B(8점), C(6점), D(4점), E(2점)

* 각 평가항목별 평가치를 항목가중치로 가중 평균하여 합산

* 각 거래 자산별로 일정한 수의 범위 이내에서 거래 가능한 투자중개업자로 선정</td></tr>
<tr><td>나. 장내 파생 상품 거래</td></tr>
</table>

* 증권, 장내파생상품 중 일부 자산은 상기 기준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상기 선정기준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투자주체	한화자산운용주식회사
투자목적	고유재산의 효율적 운용
투자금액	10억원
투자기간	2018년 2월 8일부터 6개월 이상
투자금 회수 계획	집합투자업자가 손익구조 또는 자금사정을 고려하여 고유재산으로 투자한 자금이 필요할 경우 환매할 예정이며, 안정적인 펀드 운용이 가능하도록 환매시기를 2회 이상 분할할 예정입니다.
투자금 회수내역	① 1회차: 5억원 (2022.11.29 환매청구) ② 2회차: 5억원 (2022.12.21 환매청구)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해당사항 없음

[붙임] 용어풀이

금융투자상품	이익 추구 혹은 손실 회피 목적으로 만들어진 재산적 가치를 지닌 금융 상품으로 증권 및 파생상품 등이 이에 속합니다.
집합투자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금융 투자 상품 등에 투자하여 그 운용 성과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펀드	집합투자를 수행하는 기구로서 법적으로 집합투자기구라 표현되며 통상 펀드라고 불립니다. 대표적으로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투자신탁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간 신탁계약 체결에 의해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수익증권	펀드(투자신탁)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증권으로서 주식회사의 주권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순자산	펀드의 운용 성과 및 투자원금을 합한 금액으로서 원으로 표시됩니다.
증권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50%를 초과하여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개방형	환매가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추가형	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모자형	운용하는 펀드(모펀드)와 이 펀드에만 투자하는 펀드(자펀드)로 구성된 펀드 형태를 말합니다. 자펀드는 모펀드 외에는 투자할 수 없습니다.
종류형	멀티클래스 펀드로서 자금납입방법, 투자자자격, 투자금액 등에 따라 판매보수 및 수수료를 달리 적용하는 펀드입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가격으로서 매일매일 운용성과에 따라 변경되며 매입 혹은 환매시 적용됩니다.
자본이득	펀드 운용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시세 차익을 말합니다.
배당소득	펀드 운용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자 및 배당금을 말합니다.
보수	펀드에 가입 후 펀드 운용 및 관리에 대해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선취수수료	펀드 가입 시 투자자가 판매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후취수수료	펀드 환매 시 투자자가 판매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환매수수료	펀드를 일정 기간 가입하지 않고 환매할 시 투자자에게 부과되는 비용으로 그 비용은 펀드에 귀속됩니다.
설정	펀드에 자금이 납입되는 것을 지칭합니다.
해지	펀드를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투자회사의 해산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수익자총회	집합투자규약상의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 펀드의 모든 가입자들이 모여서 의사 결정하는 기구. 그 방법 및 절차는 법령 및 해당 규약에 따릅니다.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금융투자협회가 투자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활용할 수 있도록 펀드에 부여하는 5자리의 고유 코드를 말합니다.
원천징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보통은 판매회사)가 그 지급받는 자(투자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교지수	벤치마크로 불리기도 하며 펀드 성과의 비교를 위해 정해놓은 지수입니다. 일반적으로 Active 펀드는 그 비교지수 대비 초과 수익을 목표로 하며 인덱스 펀드는 그 비교지수 추종을 목적으로 합니다.
레버리지효과	차입 등의 방법으로 투자원본보다 더 많이 투자함으로써 투자성과의 크기를 극대화하는 효과를 말합니다. 상승하면 원본으로 투자하는 것보다 수익이 더 크지만 하락하면 오히려 손실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선물환거래	미래의 거래 환율 가격을 현재 시점에서 미리 정해놓는 거래를 말합니다.
금리스왑	금융 기관끼리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일정기간동안 상호교환하기로 약정하는 거래를 말하여 금리상승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주로 활용됩니다.
성과보수	집합투자업자가 펀드의 성과에 따라 추가적으로 받는 보수를 말합니다.
신주인수권부 사채	주식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미리 약정된 가격에 따라 일정한 수의 신주 인수를 청

	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입니다.
자산유동화증권	자산유동화증권이란 자산을 담보로 발행된 채권을 말합니다.
전환사채	사채로 발행되나 일정 기간 이후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사채를 말합니다.
주식워런트	주식워런트는 특정 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사고 팔 수 있는 권리증서로 주식옵션과 유사합니다.